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50 발의연월일: 2025. 4. 8.

발 의 자: 강선영·고동진·이인선

강대식・곽규택・김 건

김대식 • 이만희 • 김용태

유용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복무 중인 병(兵)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도 병과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병역법」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3호가목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가목 중 "병(兵)이 받는 급여"를 "장교, 준사관, 부사관 및 병(兵)이 받는 급여."로 하고,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병역법」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	제12조(비과세소득)		
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			
세하지 아니한다.	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	3		
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			
하는 소득			
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	가		
무 중인 <u>병(</u> 兵)이 받는 급	<u>장교,</u> 준사관, 부사		
<u>여</u> <단서 신설>	관 및 병(兵)이 받는 급여.		
	다만, 「병역법」 제18조		
	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		
	<u>으로 한정한다.</u>		
나. ~ 처. (생 략)	나. ~ 처. (현행과 같음)		
4.・5. (생 략)	4. • 5. (현행과 같음)		